

<p>여 위원의 일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토록 하거나, 성격이 같은 센터 전체를 포함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여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 협의회 제도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형식적인 협의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p> <p>가. 수정이유 입법체계상 용어 사용이 부적절한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함.</p>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의 수탁가능자로 정한 "법인 등"과 안 제17조의 "법인이사회"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통일을 기하고자 함.(안 제17조) ○ 운영협의회의 위원 구성시 7인 이내로 하되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개선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계약된 복권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제거함.(안 제5조제2항 및 조례 제3181호, 제3210호, 제3267호의 부칙 제2항).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모자복지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명확히 함.(안별표). <p>(1)1순위 : 「생활등급 1~4급」→「거액보호자」 (2)2순위 : 「생활등급 5~7급」→「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거액보호자를 제외한 자」 (3)3순위 : 「생활등급 8급이하」→ 삭제</p> <p>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제외하여 간소화하였으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각 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계약효력의 계속 인정에 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제2항과 같이 계약기관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의 관리기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임대시설물의 명도지연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의 실질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보임. 		
<p>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625</td> </tr> </table> <p>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p> <p>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규태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1999. 2. 8) 및 노인복지법 (2000. 1.12)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약 신청시 제출</p>	의안 번호	625	<p>124</p>
의안 번호	625		

<p>다만, 영업개시 전 뿐만 아니라 영업개시 이후에도 같은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업개시 지연이나 영업중단 기간 만큼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계약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계약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에 연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p> <p>○ 이미 계약된 임대시설물의 경우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고 하는 부칙 제2조의 경과 규정을 삭제한 것은 그 동안 법리상 논란이 되어온 기존 계약자와의 계약의 효력과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p> <p>계약효력의 계속인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리상이나 또한 서울시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6개 단체가 서울시 지하철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판매대 등 운영계약 취소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2000. 4. 12) 결과를 볼 때, 기존의 임차인과의 계약의 효력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전과 같이 존치의 실익도 없는 경과조치를 두어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p> <p>○ 계약우선순위를 정한 제5조의 별표의 개정안 중 “순국선열 유족”을 “독립유공자 후손(자녀 및 손자녀)”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유족의 경우에만 해당되던 것을 순국선열은 물론 애국지사까지 포함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수혜가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나,</p> <p>이는 동조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유족”과 개정안 별표의 “독립유공자 후손”은 용어사용이 일치되지 않으며, 또한 후손으로 할 경우 배우자 등 다른 유가족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례개정 취지에 비춰볼 때 조례 제1조와 제5조 별표의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수정하여</p>	<p>용어사용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p> <p>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p> <p>가. 수정이유 동 조례안 중 시설물에 대한 계약 신청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중 독립유공자 후손의 범위와 용어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일부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p> <p>나. 주요골자 ○ 안 제5조 별표와 같이 종래의 “순국선열유족”을 “독립유공자후손”으로 확대하려고 하지만 후손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유가족”으로 수정함. (안 제1조 및 제5조 별표)</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p> <p>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에관한제수수료징수 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 <td style="padding: 2px;">638</td> <td style="padding: 2px;">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td> </tr> </table> <p>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장</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6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규태 보건복지국장)</p> <p>가. 제안이유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제2항에 종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에 따른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1월 12일자로 동법이 개정되면서 동조항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검사・시험에 대한 항목별 수수료액</p>	의안 번호	638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의안 번호	638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